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대여·배포 금지내용의 표시문구 및 크기 등

(제25조제1항 관련)

구분	표시문구	표시크기	표시장소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판매 금지	표시문구는 한 면이 40센티미터 이상, 다른 한 면이 10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금지		
3.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을 겸하는 영업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4.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중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금지	표시문구는 한 면이 5센티미터 이상, 다른 한 면이 15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